

원불교에서의 종교교육과 인권

박 희 중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의 인권(종교의 자유)과 관련하여 원불교의 교립학교에서 바람직한 종교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학생의 인권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다. 종교교육은 건학이념의 실현이라는 교육의 목적성을 갖는 반면, 교화의 수단이 될 경우 학생들의 평등하고 공정하게 누려야 할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 원불교 교립학교 종교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면, 교화적 관점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수업내용과 종교활동에서 인권의 차별적 요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종교교육의 방향은 ‘종교학 교육+인성교육+교화활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은 원불교 교립학교 종교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는 종교교육의 프로그램 개발, 교재, 교수-학습 방법, 평가, 종교교사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핵심 주제어: 종교의 자유, 종교교육, 학생인권, 종교문화, 인성

I. 이끄는 말

일찍이 원불교를 창건한 소태산 대종사(少太山 朴重彬: 1891~1943)¹⁾는 “미래시대는 천권(天權)보다 인권(人權)을 더 존중할 것”²⁾이라고 했다. 이러한 인권시대의 선언은 그가

1) 이하 ‘소태산’이라 칭함.

2) 『대종경』, 불지품 13장.

천명한 일원상 진리를 통해 인간을 부처로 바라봄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절대화 했으며, 기본교리인 사은·사요 삼학·팔조에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권의 핵심가치를 담고 있다. 특히 사요의 교리는 인권의 평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법률적 의미에서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³⁾를 말한다. 우리의 삶속에서 인권이 강조된다는 것은 현실상 인권의 차별이 있다는 것이며,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가 있다는 말도 된다. 인권이라는 단어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근대정신의 큰 축이었던 ‘자유’와 ‘평등’의 정신 등이 함축되어 있다.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⁴⁾의 제정으로 학생의 인권과 학교의 교육권이 상호 큰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학생인권을 어디까지 보장해주느냐에 따라 교사의 교육권과 학교의 교육방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종교교육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논쟁의 중심에 서있고, 교육현장에서는 쉽게 다룰 수 없는 미묘한 부분이기도 하다. 종립사학에서 행해지고 있는 종교교육의 목적이 특정 종단의 교화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교육적 목적을 띤 종교교육인가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 논란은 바로 종교교육의 성격, 그리고 학생의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종립사학의 경우 건학이념의 구현이라는 목적아래 종교교육이 필수과목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택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종교사학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다종교 상황 아래서 어떻게 하면 설립취지나 건학이념에 충실하면서 보편교육으로써 종교교육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인가가 과제인 것이다. 원불교가 설립한 교립학교⁵⁾ 또한 이러한 고민을 안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원불교에서 세운 교립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종교교육을 실현할 것인가를 전제하고 있다. 이 말은 ‘종교교육은 필요하다’에서 논의의 출발점을 삼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의 필요성을 논하고, 실제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교육의 현황과 종교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종교교육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을 고려한 바람직한 종교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궁구해 보고자 한다.

3) Daum 국어사전.

4)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2012년 1월 26일에 공포됨.

5) 원불교에서는 종립학교라는 표현대신 ‘교립학교’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후는 ‘교립학교’로 쓰기로 한다.

II. 종교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 신앙의 자유와 종교 활동의 자유가 있다. 종교 신앙의 자유가 절대적 자유라면 종교 활동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권에 속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의 신앙의 자유와 학교의 종교 활동의 자유 간의 충돌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학생의 종교자유에 관한 논쟁은 2004년 대광고 강의석군 사례를 통해 이슈화된 문제이다. 그 논쟁의 핵심은 학생의 신앙의 자유 침해 주장과 헌법에 보장된 종교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와의 충돌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런 기본권이 서로 충돌할 때 해결방법은 현실적으로 조화를 모색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 그러나 최근 추세는 학생의 인권을 우선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말하자면 학교의 종교자유권보다는 학생의 인권차원에서 종교자유가 우선된다는 말이다.⁶⁾ 강의석 사건의 경우 학교의 종교수업 강요에 대해 학교는 배상해야 한다고 2010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했다. 학생의 종교자유권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1. 학생인권과 종교의 자유

1948년 12월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 1조에는 모든 인간이 권리에 있어 동등하고, 제18조에는 모든 사람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학생인권이 적용되는 테두리는 학생의 신분을 감안할 때 당연히 교육과 관련이 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경우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⁷⁾

우리가 학생인권에 관심 가져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의하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권의 최종 목적은 자유롭고 행복한 삶으로 규정할 수 있다. 역으로 살펴보면, 그러한 삶에 기본요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 것이며, 그 보장의 수단이 〈학생인권조례〉라는 법적 장치로 볼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존중과 권리와 책임의 영역이다. 학습자인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한다는 것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확인이며, 개별 인간이 갖는 개성에 대한 중시이다. 혹 개성이 중시되지 않고 특별한 것으로 취급될 경우 개인의

6) 김귀성,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기독교교육정보』 제30집,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11, 17쪽 참고.

7) 서울특별시조례 제5247호.

자유는 억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 및 보호자, 그리고 학교라는 기관과 교사는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감을 가진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본 주제와 관련된 종교의 자유에 대해 살펴보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나타난 종교 관련 내용은 두 부분이다. 하나는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중 종교로 인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제16조 ‘양심·종교의 자유’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⁸⁾

위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은 종교사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교교육에 관한 학생의 종교 자유권이라 볼 수 있다. 3항 각 호에는 학교에서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종립사학에서는 위에 열거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금지조항을 자세하게 명시한 것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종교자유권의 침해가 사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가능성을 전제한다고도 볼 수 있다. ‘강요’, ‘방해’, ‘차별’, ‘제한’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갖는 것과 특정

8)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5247호.

종교를 지나치게 선전(선교)하는 행위를 금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학생의 종교의 자유가 최대로 보장될 때 종교교육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2. 종립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

우리나라 헌법 제 20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의 신앙의 자유와 종교행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신앙의 자유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신앙을 갖거나 갖지 않을 자유, 종교를 선택하거나 변경 혹은 포기할 자유, 신앙을 고백하거나 고백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등을 포함하며 특히 국가 등 외부의 영향력에 의한 강제가 금지되며, 개인의 신앙이나 불신앙으로 인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기도 한다.⁹⁾ 이러한 신앙의 자유는 인간 내면의 자유이며 기본권의 핵이 되는 본질적 권리로서 어떤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기본권이며 절대적 자유에 해당한다. 이에 반면에 종교행위의 자유는 내면의 신앙을 다양한 방식으로 밖으로 표출하며 신앙에 따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종교행위의 자유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에서 문제시되는 영역으로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적 교육의 자유, 선교(포교)의 자유,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이 해당된다.

종교교육의 자유는 자신의 종교적 교리에 기초하여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능동적으로는 종교교육을 실시할 자유를 의미하지만, 수동적으로는 종교교육을 받거나 받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하거나 특정 종교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의 내용과 방식 등 모든 면에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종교교육은 사립학교에 한정될 뿐 국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학생이 강제로 배정된 경우 특정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타종교를 가진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¹⁰⁾

신앙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에 해당된다면, 종교행위의 자유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변적 권리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신앙의 자유와 신앙행위의 자유가 부딪칠 경우 신앙의 자유가 종교행위의 자유보다 더 보호되고 보장되어야 할 권리로 판단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종교교육은 종교행위의 자유에 해당되므로 기본권인 신앙의 자유가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광고 강의석 군의 대법원 최종판결이 이를 뒷받침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 제20조 2항에 의해¹¹⁾ 정교분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국가

9) 김철수, 『헌법학개론』(서울: 박영사, 2005), 677쪽.

10) 최윤진, 「학생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제7권 2호(광주: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2007), 172쪽.

에 의한 모든 종교의 동등한 대우를 의미하고, 이것은 국가에 의한 종교교육, 종교 활동 금지에 따라 국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교육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종교사학의 경우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이념의 실현이라는 교육기관 설립의 목적에 따라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종교사학이다 할지라도 국가로부터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특정종교의 종교교육에는 제한이 따르게 된다.

이상과 같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앙의 자유와 신앙행위의 자유에서 일반 종교사학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중립주의’의 입장을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중립주의는 학교에서 종교 자체를 주입, 강요, 교화시키는 일은 금하는 대신에 종교에 관해 이해시키고 가르치는 일은 가능하고, 공적인 종교 개입은 안 되지만 사적인 견해와 입장 표명은 가능한 입장이다.¹²⁾

종교사학의 경우 대부분 선교(포교)를 건학이념으로 삼고 종교교육을 일차적 교육목적으로 삼아 학교를 건립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 치더라도 공교육 시스템 속의 학교로 존재하는 한, 보편적 국민 기본 교육 수행의 공적책임을 최상위에 두고 학교와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책임을 지을 수는 없다. 종교계 학교는 종교단체와 다르며 선교(포교)보다 교육의 기능을 더 우선시해야 할 것이며, 교육이 선교(포교)의 수단으로만 간주되어 학생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누려야 할 교육권을 침해하고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¹³⁾ 지금까지 종교교육학에서 논의된 결과이다.¹⁴⁾

Ⅲ. 학생의 종교자유권에 따른 종교교육의 방향

1. 교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의 필요성

원불교 교립학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원창학원의 건학정신은 “학교법인 원창학원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교 개교정신에 바탕하여 과학과 도학을 겸한 전인교육으로 새 문명사회 건설의 주역 양성을 건학의 기본정신으로 한다.”¹⁵⁾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건학정신은 교육을 통해 원불교 정신을 실현시키기 위한 교립학교 교육의 기본방향이 된다. ‘과학과 도학을 겸한 전인교육’으로 천명된 바와 같이 교립학교에서 도학 교육, 즉 종교교육의 필요성은 건학정신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명제이다.

11)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12) 최윤진, 앞의 논문, 177쪽.

13) 최윤진, 앞의 논문, 179-180쪽.

14) 이 문제에 대해선 대부분의 연구자들(정진홍, 김귀성 등)이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15) 원창학원 홈페이지 <http://www.wonchang.or.kr/>

정산(鼎山 宋奎, 1900~1962)¹⁶⁾은 그의 『세전』에서 “교육은 세계를 진화시키는 근원이요 인류를 문명케 하는 기초”¹⁷⁾라고 밝힌다. 이에 더하여 개인·가정·사회·국가의 성쇠와 흥망을 좌우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진단한다. 교육을 통해 인간이 인간다움의 자격을 갖추게 될 뿐만 아니라 개인·가정·사회·국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산은 교육을 크게 과학교육과 도학교육으로 나눈다. 과학교육은 물질문명의 근본으로서 세상의 외부 발전을 맡았고 도학교육은 정신문명의 근원으로서 세상의 내부 발전에 필요한 교육이다. 그런데 과학과 도학의 이 양대 축은 서로 바탕이 되므로 문명의 발달과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는 두 가지 교육이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하는 당위성을 갖는다. 이성과 같은 과학과 도학의 겸전은 소태산이 주장한 물질개벽에 따른 정신개벽의 필요성, 즉 물질문명을 대표하는 과학교육과 정신문명을 대표하는 도학교육으로 설명할 수 있다.

건학정신의 실현이라는 대명제 하에 교육현장에서 종교교육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으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종교문화교육의 필요성’¹⁸⁾이다. 주지하듯이 우리 사회는 다종교사회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종교인구 분포를 감안할 때 다종교 국가로 볼 수 있으며, 종교인구 또한 전 인구의 반수를 조금 넘는 53.1%이다.¹⁹⁾ 인구의 반절 이상이 종교를 신앙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다종교국가에서 요구되는 것은 종교와 종교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이다. 타종교의 교리, 사상, 문화 등을 배움으로써 이 사회에 건전한 종교적 가치관 확립과 성숙한 종교문화를 형성할 수 있으며, 공존의 질서를 통해 평화의 세계를 건설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갈등의 모순을 벗어나 상호 이해와 협력해야 한다는 당위적 목표 외에, 다종교 국가가 갖는 풍부한 종교적 토양을 통해 종교적 성숙, 인생의 참된 행복의 길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인성교육의 요청이다. 세상에 종교 인구는 많은데 종교성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한다. 이것은 종교가 인간의 삶과 유리되었다는 것이다. 인간 삶의 궁극적 가치, 인간존재에 대한 깨달음, 이런 교육은 학교교육에서 다른 교과목이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종교의 가르침의 목적은 단순한 종교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인간행동의 변화에 있다. 성자적 인격을 닦아가고 현 시대가 요청하는 바람직한 인격완성을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특히 성적우선주의, 학교폭력과 왕따로 인한 인간성 파괴, 창의성 없는 학습기제로 전락한 학교교육의 부정적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인성교육은 필요하다.

현재의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창조적인 삶의 방향을 추구하도록 하는 방향모색이 필

16) 이하 ‘정산’이라 칭함.

17) 『정산종사법어』, 제1부 세전, 제2장 교육, 1. 교육에 대하여.

18) 정진홍, 「제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13권(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참조.

19)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요하다. 청소년은 미완성의 인격체이다. 자신의 이상과 현재의 나와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자기수정능력,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공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희생봉사심 등 자신을 가꾸는 인격도야에 학교의 종교교육은 큰 힘이 될 수 있다. 인권의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의 자유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종교교육은 자신의 성장은 물론 사회의 발전의 위해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2. 교립학교 종교교육의 현황과 교사의 인식

원불교 교단에서는 원광고등학교 외 7개의 중·고등학교와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특성화교육을 하는 11개의 대안 중·고등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이들 모든 학교에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성직자인 교무가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교립학교는 아니지만 해당 재단의 요청에 의해 휘경학원 산하 휘경여자 중·고등학교와 훈산학원 산하 전북제일중·고등학교에 교무가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기도 하다. 교단내 중·고등학교 현황을 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교단내 중·고등학교 현황

구분	학교수	학교 명칭	허가일자	홈페이지
중학교	8	원광중	1946.05.01	www.wonkwang.ms.kr
		원광여중	1956.04.10	www.wongwang.ms.kr/
		해룡중	1970.06.01	www.haeryong.ms.kr
		성지송학중학교	2001.10.31	http://sjsh.ms.kr
		지평선중학교	2002.10.18	www.jipyeongseon.kr
		훈산중학교		www.heonsan.ms.kr
		한거래중학교	2005.07.11	http://han.hs.kr
		은혜학교(중·고통합과정)	2011.03	www.eh-school.sc.kr
고등학교	9	원광고	1954.02.23	www.wonkwang.hs.kr
		원광여고	1960.04.08	www.wonkwang-gh.hs.kr
		원광정보예술고	1956.04.08	www.wia.hs.kr
		해룡고	1974.01.05	www.haeryong.hs.kr
		영산성지고등학교	1977.12.26	http://yssj.hs.kr
		경주화랑고등학교	1998.02.04	http://hwarang.school.gyo6.net
		원경고등학교	1997.12.30	www.wonkyung.hs.kr
		지평선고등학교	2002.10.18	www.jipyeongseon.kr
		한거래고등학교	2005.07.11	http://han.hs.kr

논자는 교립학교의 종교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지법을 이용하였다. 해당학교는 원창학원 내 5개 학교이며,²⁰⁾ 종교교육(수업)과 법회를 함께 담당하는 교무에게 아래의 질문에 답변을 요청하였다. 질문지는 2012년 4월 3일에 이메일로 발송하여 4월 16일에 5개 학교 전부에서 답변을 받았다. 응답해준 5명 모두 원불교 성직자인 교무로서 남자 1, 여자 4명이며, 1명은 교직 1년차에 해당되고 나머지 4명은 4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고 있다.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은 중복된 내용은 피하고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1. 귀교에 개설되어 있는 종교관련 교과목명, 주당 시간수, 교과목 운영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교과목명: 주당 시간수: 교과목 운영 내용:
2. 종교관련 교과목 외에 교립학교의 건학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교과목명, 시간수, 교과목 운영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교과목명: 주당 시간수: 교과목 운영 내용:
3. 교립학교에서 타종교를 신앙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4. 교립학교에 근무하는 교무로서 교화와 교육 중 어느 부분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이유를 써주시고 혹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5. 종교의 자유(학생)와 종교교육의 자유(학교 or 재단)에 대해 교무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6. 교립학교에서 바람직한 종교교육의 방향에 대해 교무님의 자유로운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1) 학교별 종교관련 교과목명, 주당 시수, 교과목 운영내용

〈표 2〉 학교별 종교관련 교과목명, 주당 시수, 교과목 운영내용

학 교 명	교과목명	주당 시수	과정	교과목 운영내용
원광중	창의적 체험활동	1	1년	창의성과 인성을 발달시키는 종교인성교육
원광여중	창재(종교)	1	1년	종교개론, 세계종교 둘러보기, 한국종교 둘러보기
원광고	종교와 철학	1	1년	각 종교 이해
원광여고	종교/철학	1	1년	인성교육 - “나의 바른 성장 노트 - 귀공주” 점검 및 마음공부
원광정보예술고	생활과 종교, 생활과 철학	1	1년	마음공부와 인성교육

20) 조사대상을 원창학원으로 한정한 이유는 원불교 교립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고려하였다. 원창학원 내 학교는 익산지역에 위치한 학교로 원불교 교립학교의 건학이념이 가장 잘 실현되는 학교이다. 나머지 학교 또한 원불교 정신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이긴 하나 대안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앞의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학교의 종교교육은 창의적 재량학습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종교 또는 철학의 교과목을 개설·운영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수업은 주당 1시간, 개설학기는 1학년과 2학년에 1년 과정으로 개설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원여중에서는 창재(인성) 과목을 개설하여 인성교육을²¹⁾ 실시하고 있으며, 원광정보예술고의 경우에도 ‘마음공부’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교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은 ‘종교’와 ‘인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 직접 교화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법회를 주1회 운영하고 있다.

2) 타종교 신앙인 학생에 대한 배려

Q: 타종교를 신앙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A학교: 타종교 소개. 타종교의 교리나 신앙체계를 함께 가르침. 법회는 자유 참석.

B학교: 종교들 간에 배정시간을 똑같이 맞춰서 진행. 종교를 일반론적 관점에서 설명. 각 종교의 핵심내용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균형감 유지. 법회는 자유 참석.

C학교: 원불교도 다른 종교와 똑같은 시간수로 운영. 법회는 자유 참석

D학교: 종교 관련 수업이 아닌 인성교육으로 수업진행. 법회는 자유 참석

E학교: 마음공부와 인성교육 중심으로 수업진행. 원불교에 대한 기본안내만 하고 종교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음. 법회는 자유참석.

먼저 살펴볼 사항은, ‘타종교를 가진 학생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가’이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교육을 받거나 받지 아니할 자유까지를 포함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교립학교에서 운영되는 교과목은 명칭에 있어 원불교라는 교명을 직접 표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용과 그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교무라는 신분을 감안하면 절대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교과목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종교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공립학교가 아닌 종립사학이 시행하는 종교교육의 자유의 관점에서 볼 때 위의 내용들은 최소한의 제한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종교 편향성의 문제이다. 종립사학의 특성상 종교교육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용인된다고 볼 때, 교립학교에서 행해지는 종교교육은 어느 정도 종교편향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교육과 학생 중심의 교육이 행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불교라는 특정종교에 대해 치중하지 않고 종교들 간에 배정시간을 균등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교화적 목적을 가진 법회참석은 의무가 아닌 자율참석을 실시함으로써 학생의 종교자유권

21) 인성교육의 내용으로는 자아성찰, 꿈, 행복, 은혜, 감사, 칭찬, 배려, 나눔, 환경, 봉사, 도덕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을 보장한다고 볼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일부 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을 완전히 배제하고 인성교육으로의 대체 또는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점이다.

3) 교육과 교화에 대한 교사의 관점

Q: 학교에 근무하는 교무로서 교화와 교육중 어느 부분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

A학교: 교육가운데 교화가 있다고 생각. 마음공부를 통한 인성교육이 곧 교화라고 생각함.

B학교: 교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종교적인 품성을 길러줘야 하고 자율적인 종교 참여활동을 통해 교화로 연결되어야 한다.

C학교: 교육과 교화를 둘로 보지 않는다. 원불교인을 만드는 것만이 교화라고 보지 않는다. 원불교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교화라고 생각한다.

D학교: 교육과 교화를 둘로 보지 않는다. 수업시간이 교육이라면, 상담 및 법회활동은 교화의 영역이다.

E학교: 교육을 잘 하는 것이 교화를 잘하는 것이라 생각. 실제로 있어서는 교화적인 것(법회와 입교)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대체적으로 교육과 교화를 둘로 보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교육을 잘 하는 것이 교화를 잘 하는 것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발견할 수 있다. B학교의 경우 교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교화의 의미와 내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교육과 교화가 상호 대립이 아니라 보완의 관계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이 교화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교화를 포기한다는 의미보다는 원불교와 교무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인 교화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즉, 당장 교도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닌 잠재 교도로 키우는 것을 교화로 보는 것이다. 다만, E학교의 경우와 같이 현실에서는 법회와 입교와 같은 교화적 내용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4) 종교의 자유와 종교교육에 대한 관점

Q: 종교의 자유(학생)와 종교교육의 자유(학교 or 재단)에 대한 교무님의 의견은?

A학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마음공부를 통한 인성교육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상관 없이 올바른 인성함양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B학교: 학생들의 종교자유는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종교교육 또한 건학정신을 실천을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 종교 활동에 대해선 자유의지대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C학교: 수업내용이 각 종교를 수업하고, 인성에 대해, 마음에 대해 수업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 충돌은 없다. 종교의식은 자유참석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D학교: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단, 종교교육을 통해 중립학교의 특성을 교육할 필요성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웃종교에 대한 포용과 배려, 무종교 학생에게는 종교와 인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E학교: 종교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 사이에 중심을 잡는 것이 어려운 숙제이다.

대부분의 교무들이 교립학교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종교교육(수업) 내용에서 종교편향이 없이 균형감 있는 종교교육을 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인성교육과 법회의 자유참석의 측면에서 볼 때, 학생의 종교의 자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단, 종교의 자유를 종교교육에 대한 거부로 해석하는 것에는 경계하고 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건학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종교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종교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 간에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바람직한 종교교육의 방향

Q: 교립학교에서 바람직한 종교교육의 방향은?

A학교: ① 종교문화를 공부하는 교양수업이어야 한다. ②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인성교육에 힘써야 한다.

B학교: ① 학교교육이 주가 되고 종교교육이 종이가 되어야 한다. ② 학생들의 종교자유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재단의 건학이념 실현(교화)은 일부 제한되어야 한다.

C학교: ① 지금의 상황(종교일반 교육+인성교육)이 바람직하다. ② 종교일반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교육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가 필요하다.

D학교: ①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종교교육은 휴식과 자신성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② 종교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E학교: ① 종교라는 과목이 오히려 학생들과의 만남을 방해하기도 한다. 인성지도와 종교의 공통정신을 배울 수 있는 “생활과 마음”, “인생과 마음공부”로 과목명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② 지식적인 종교교육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학생들의 정서와 인성의 바른 성장, 인생의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③ 종교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내용을 크게 ‘종교문화 교육’과 ‘인성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문제는 인성교육을 종교교육과 별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종교교육의 내용에 포함시켜 볼 것인가이다. 대체로 교사들의 인식은 종교교육과 인성교육을 나눠보는 입장으로 보인다. 경중을 논한다면 종교교육보다는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시사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분석·정리한 후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종교관련 교과목명으로 ‘원불교’라는 교명이 직접 언급되지 않고 ‘종교/철학’이거나

창의재량/창의체험 내에서 종교수업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실제 내용에서는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고 인성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립사학의 입장에서 볼 때 종교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종교교육에 대한 거부권, 즉 종교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보장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단, 종교교육의 내용은 특정종교에 편향되거나 그로 인해 종교 차별적 요소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③ 교사들의 경우 종교교육보다는 인성교육을 더 중요시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교화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교화적 관점에서 있는 법회는 자율참석을 보장하고 있으며, 교사는 교육과 교화를 동등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경중을 논할 경우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④ 어떤 형태로든지 종립학교로서 건학정신을 실현할 종교교육은 필요한데, 그 방법은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종교교육의 내용은 종교문화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3. 교립학교 종교교육의 방향

우리나라와 같은 다종교사회에서 특정종교를 중심한 종교교육에는 사실상 많은 제약이 따른다.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이 다른 경우 종교교육 자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무종교인의 경우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가 자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종교계사학의 경우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교육기능과 종교기능 양자를 감안하여 종교교육의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면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콘텐츠를 통해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더불어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을 실현할 것인가에 공의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두 방면에서 바람직한 종교교육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종교학(종교문화) 교육

정진홍은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종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인류의 문화를 새롭게 읽고, 현실적인 삶의 복지를 위하여 그러한 문화현상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터득하게 하는 것으로 그 차별성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²²⁾ 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교과목명도 ‘종교와 철학’이라는 딱딱한 느낌보다는 ‘종교와 인간’, ‘종교와 문화’²³⁾ 등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종교학이라는 학술적 교육보다는 종교문화라는 문화적 접근을 통해 종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로 보인다.

22) 정진홍, 『제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13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12쪽.

23) 정진홍 교수의 제안.

그런데 최근 고시된 중등학교 교육과정(제2012-3호, 2012.03.21)에 의하면 2009년 교육과정에서 선택 교육과정인 “생활과 종교”가 “종교학”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²⁴⁾ 교과목명이 종교→생활과 종교→종교학으로 바뀐 셈인데, 종교학으로 그 명칭이 바뀐 이유는 교과목의 성격을 명료화 한 것으로 설명된다. 즉 종교학의 목표를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일반적인 교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과목”으로 밝힘으로써 종교교육을 교양교육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 ‘종교학’에서 밝히고 있는 목표는 ““종교학 과목은 다양한 종교의 세계를 이해함으로써, 가치 있는 삶에 대해 성찰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전인적 인간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²⁵⁾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종교학 교육의 필요성²⁶⁾에도 불구하고 교립학교에서는 이를 실행하는데 몇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종교사학 중고등학교일 경우 특정종교의 종교교육에 치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²⁷⁾ 둘째,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이 요구하는 종교학의 분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종교학을 배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셋째, 성직자가 자기 종교 이외의 종교를 가르친다거나 종교문화 일반을 비판적 인식의 차원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²⁸⁾ 넷째, 중학교의 경우 교과목 선택으로 종교학이 없다.²⁹⁾ 따라서 종교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적 접근은 선택과목을 개설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에서 실시할 수밖에 없다. 갈수록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포괄적 법의 테두리는 좁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4) 김귀성, 『원불교 교립 중등학교 “종교” 교과서 개발의 현황과 과제』, 『종교교육학연구』 제38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2), 56쪽.

2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고시(2012. 3.21), 교육과학기술부.

26) ‘종교학’ 교과서의 기본 목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한다. ‘종교학’ 과목이 추구하는 것은 특정 종교의 신앙심을 배양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포괄적이고 올바른 지식을 통해 종교를, 그리고 신자나 비신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종교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간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인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배양한다. 인간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종교들의 다양한 답변을 살피는 것은 이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주며, 학습자의 전반적인 인격 성숙에 도움이 된다.

셋째, 종교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르게 참된 삶의 태도를 기른다. 다양한 종교들을 살피는 목적은 자신의 종교를 좀 더 깊이 이해하거나 종교에 담긴 인간의 기획과 진정성을 발견하고, 다른 종교들에 대한 배려의 태도를 기르는 데에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 “종교학”,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고시(2012.3.21).

27) 종교교과서 개발을 보더라도 ‘종교’ 교과서는 외형상 현행 교육과정 체제를 따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엄밀히 말하면 교육과정 체제를 자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귀성, 『“종교” 교재 개발의 과제와 전망』, 『종교교육학연구』 제22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126쪽.

28) 정진홍, 위의 논문, 38쪽.

29) 학교는 새로운 선택과목이 필요할 경우 절차에 의해 개설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교(학)교육을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논자의 주장이다. 종립학교의 특성과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국공립학교에서 할 수 없는 종교교육을 과감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종교교육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적 목표를 갖는다면 당위론적으로 종교교육은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단, 종교교육의 방향은 교도를 확보하기 위한 교화중심의 종교교육을 지양하고 종교에 대한 건전한 상식을 지닌 교양인을 양성하기 위한 종교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중요한 문제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이다. 예를 들어 종교문화를 중심으로 교육한다고 할 때,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접근할 수 있다. 특정 종교위주의 교리 주입이나 종교행사 참여보다는 자발적이고 선택적인 분위기에서 다양한 종교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겨레 중학교³⁰⁾의 종교교과 학습 지도계획안을 보면 타종교를 이해할 수 있는 종교학적 교육과 종교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종교체험활동(종교 탐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은³¹⁾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2) 인성교육(도덕교육)

인성교육은 원불교 종립사학의 건학이념을 실천하고 청소년들에게 바른 인성을 길러주어 미래사회의 일군으로 성장하는 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마음공부’로 대표되는 원불교의 인성교육은 학문적 평가는 물론 교육현장에서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학교교육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이나 학교 내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0, 창·인성교육기본방안’을 발표하여 인성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당위성을 반영한 교육이고, 교육의 목표는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것, 나아가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할 것’임을 나타냈다.³²⁾ 교육의 본질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³³⁾이라고 볼 때 인성교육은 학교교육에서 기본 교육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인성교육을 정확히 정의내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대체적으로 윤리교육이나 도덕교육 정도로 인식하기도 한다.³⁴⁾ 또한 인성교육과 종교교육의 구분 또한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30) 새터민 교육기관.

31) “의외로 ‘종교’ 교과서 중심의 수업은 적고, 영상물을 공동 관람하고 토론하거나 교과서 보다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시용, 「다문화사회와 원불교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36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134쪽.

32)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 육성: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기본방안』(2010); 이은진·박세훈·오주은·양미하,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태」, 『종교교육학연구』 제38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2), 27쪽에서 재인용.

33) E, 뒤르켐, 이종각 역, 『교육과 사회학』(서울: 배영사, 2000), 73쪽.

34) 이은진·박세훈·오주은·양미하,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태」, 『종교교육학연구』 제38권(서울: 한

있다. 일반적으로 인성교육은 인격양성(성장)을 위한 교육으로 보며, 학교에서는 지식을 습득하는 교과목 교육이 아니라 마음을 중심으로 한 인격성장에 도움을 주는 교육을 말한다. 올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라야 미래사회에 공헌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인성교육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³⁵⁾

본 논문에서 채택한 인성교육은 원불교 교리사상에 입각한 인성교육으로 삼학공부를 통해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삼대력을 갖춘 원만한 인격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현실적인 문제들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정의롭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말한다. 바른 인성이란 단지 ‘착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원만한 인격의 요소는 ‘정신의 자주력’, ‘일과 이치에 대한 지혜’, ‘정의를 실행하는 힘’ 세 가지를 아울러 갖추는 것이다. 원불교에서 인성교육을 도학교육의 측면으로 보는 이유이다. 이러한 인성교육의 요청은 개인의 인격성숙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적인 병리현상을 치료하고 인간성이 회복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종교교육은 필요한 것이다.

일반 학교교육에서 배제되거나 아니면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종교교육은 답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³⁶⁾ 종교가에서 실시되는 인성교육은 풍부한 종교성과 영성에 바탕한 인성교육에 강점을 갖고 있다. 원광대학교의 경우 교양교육의 목표 중에 하나로 “도덕적 품성과 도의실천의지를 갖춘 성숙한 인격체를 육성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참고할 때, 교립학교 인성교육은 도덕교육의 내용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원창학원에서는 2년의 준비 끝에 인성교육 유무념 대조표를 체계화한 나의 바른 성장 노트인 <귀공자, 귀공주>라는 인성교육 책자를 내놓았다. 이는 원불교 이념에 기초하여 인성교육의 방향을 정한 것으로 재단의 주도하에 원창학원내 각 학교 교사 대표가 참여하는 <인성교육추진위원회>에 연구·시행되고 있다.

간략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매일 10분 명상과 ‘성공을 부르는 15가지 습관’을 유무념 조향으로 정하여 좋은 습관을 형성하여 성공한 학생, 즉 귀공주 귀공자로 거듭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5가지 습관은 인성(도학)교육을 정신교육, 예의교육, 근로교육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실천사항을 도출했다. ▷정신교육 조목으로는 ① 마음 바라보기, ② 적극 감사·축원하기, ③ 아낌없는 칭찬하기, ④ 충·효심 기르기, ⑤ 큰 꿈 강한 의지 갖기, ▷예의교육 조목으로는 ⑥ 존중하며 미소 짓고 내가 먼저 인사하기, ⑦ 고운 말 바른 행동하기, ⑧ 용의복장 단정하기, ⑨ 나부터 질서지키기, ⑩ 늘 긍정하고 활짝 웃기, ▷근로교육 조목으로는 ⑪ 규칙적인 생활하기, ⑫ 건전 경제 생활하기, ⑬ 배려·나눔 실천하기, ⑭ 휴지 줍고 안 버리기, ⑮ 자연환경 살리기 등이다.³⁷⁾

국종교교육학회, 2012), 45쪽.

35) 한국인성교육협회 홈페이지 참고. <http://www.edunet.or.kr/>

36) 김귀성,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기독교교육정보』 제30집(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11), 18쪽.

37) 원불교신문, 2012년 3월 23일자, “청소년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원창학원 인성교육 좌담”.

이상의 인성교육의 실천사례는 아직 그 교육적 내용의 적절성과 효과를 평가하기엔 이르다. 다만 인성교육이 필요하고 잘 해야 한다는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겨졌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최근 보고된 “선문대학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인성교육방법 연구”³⁸⁾ 독립학교에서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그 교육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만하다.

IV. 맺는 말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의 인권과 관련하여 원불교의 교립학교에서 바람직한 종교교육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종교교육을 통해 종교사학의 건학정신을 실현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인권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독립학교에서 종교활동에 있어 ‘강요’, ‘방해’, ‘차별’, ‘제한’을 받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종교사학의 경우 건학이념을 실현할 목적으로 종교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학교가 교화기관이 아닌 공교육의 제도라 볼 때, 특정종교의 종교교육에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만약 교육이 선교(포교)의 수단으로만 간주되어, 학생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누려야 할 교육권을 침해하고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둘째, 교립학교인 원창학원은 ‘과학과 도학을 겸한 전인교육’을 건학이념으로 내세우는 학교로서 종교교육의 필연성을 갖는다. 종교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종교학을 공부함으로써 다종교사회에서 건전한 종교적 가치관 확립과 성숙한 종교문화를 형성할 수 있으며, 공존의 질서를 통해 평화세계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인성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인격완성을 위해 필요하다. 인권의 관점에서 종교의 자유를 말할 수 있으나 교육의 관점에서 종교교육은 청소년이라는 미완성자에게 자신의 성장은 물론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의 요소가 된다.

셋째, 교립학교의 종교교육의 현황을 보면, 건학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종교관련 교과목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성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은 교화보다는 교육적 관점을 우선시 하고 있으며, 수업내용과 종교활동(법회)에서 인권의 차별적 요소는 극히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38) 정진완, 「선문대학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인성교육방법 연구」, 『종교교육학연구』 제38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2).

향후 종교교육의 방향은 ‘종교학 교육+인성교육+교화활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종교학교육과 인성교육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권에 접촉되지 않는 법의 테두리에서 실행할 수 있으며, 교립학교의 정체성을 살리는 측면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분야이다. 특히 인성교육은 원불교의 개교정신에 따른 건학이념을 실현하고 현사회가 안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내용이 된다. 교화활동의 영역인 법회 참석이나 상담 등은 학생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교화활동을 종교교육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인격함양, 영성계발, 자아발견 등 학생들의 교육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항상 강조되는 부분이나 재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부분이 있다. 그것은 “종교교육의 프로그램의 개발, 교재, 교수-학습 방법, 평가, 종교교사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³⁹⁾이다. 원불교 교립학교의 경우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위에 열거한 부분들을 발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문제는 누가 주체가 되느냐이다. 각 학교에서 자발적인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재단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런데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립학교에서 시행되는 종교교육의 정체성의 확립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종교교육의 방향을 인성교육으로 한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관이 명료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39) 김귀성, 『불교계대학에서 종교교육의 문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27권(익산: 원불교사상연구원, 2004), 63-64쪽.

참고문헌

〈단행본〉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5.
 국가인권위 역. 『사회복지와 인권』. 인간과 복지.
 E, 뒤르켐. 이종각 역. 『교육과 사회학』. 배영사. 2000.

〈논 문〉

- 고시용. 「다문화사회와 원불교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36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김도공. 「인간 존엄성에 대한 교리적 근거」. 『원불교사상』. 26집. 2002.
 김귀성.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기독교교육정보』. 제30집.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11.
 _____. 「불교계대학에서 종교교육의 문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27집. 원불교사상연구원. 2004.
 _____. 「원불교 교립 중등학교 “종교” 교과서 개발의 현황과 과제」. 『종교교육학연구』. 제38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12.
 _____. 「“종교” 교재 개발의 과제와 전망」. 『종교교육학연구』. 제22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_____. 「종교교육과 인간성 회복」. 『정신개벽』. 제14집. 신통교학회.
 _____. 「학교 교육과정에서 종교교육의 개념모형 탐색」. 『대순사상논총』. 제18집.
 이은진·박세훈·오주은·양미하.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태」. 『종교교육학연구』. 제38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12.
 정진완. 「선문대학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인성교육방법 연구」. 『종교교육학연구』. 제38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12.
 정진홍. 「제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13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최윤진. 「학생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제7권 2호. 2007.

〈기 타〉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5247호.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 육성: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기본방안』. 2010.
 초중등학교학교 교육과정 개정고시(2012. 3.21), 교육과학기술부.
 위키 백과사전.
 원불교신문, 2012년 3월 23일자.
 한국인성교육협회 홈페이지 <http://www.edunet.or.kr/>
 원창학원 홈페이지 <http://www.wonchang.or.kr/>

원고접수 : 2012년 6월 7일 / 1차 심사 : 2012년 6월 22일 / 게재승인일 : 2012년 7월 18일

연구자소개 : 박희중

① 전공 : 원불교학 / 소속 : 원불교대학원대학교

② 관심영역 : 원불교 수행론, 원불교 설교학, 한국종교

③ 주요논저 : 「보조 지눌의 ‘돈오점수론’에 대한 원불교적 관점», 「‘무시선법’ 중 경계에 대한 인식과 수행의 단계 고찰», 「원불교 수행에 있어 ‘정신차림’-위빠사나의 ‘마음챙김’과 관련하여-», 「원불교 인과론의 음양상승론적 해석», 「원불교 설교에 있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등

④ E-mail : dukhee@won.or.kr

Abstract

Religious Education of *Won*-Buddhism and Human Rights

Park, Heejong

Won-Buddhism Graduate School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path-way toward desirable religious education in connection with students' personal rights (freedom of religion) to be conducted at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run by *Won*-Buddhism. Students' personal rights are important because each student is entitled to live a happy life with his or her dignity and value honored as a person. While religious education has the very aim at materializing the founding spirit of an educational institution, it may then have a risk of violating the students' rights to be furnished with education on fair and equal base if and when it is used as a means of religious enlightening. Upon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religious education provided at the *Won*-Buddhism-run schools, it was found that education there is conducted from the educational viewpoint, rather than from enlightening viewpoint, and that there is virtually little discrimination in handling their personal rights in terms of curriculum as well as in the context of religious activities. Summed up, the future direction of religious education may be 'education of religious studies+personality+enlightening activities'. Such direction is essential in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religious education to be provided at the schools founded by *Won*-Buddhism. To accomplish this task, it may be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develop programs, teaching materials and teaching-learning methods, as well as to carry out assessment and to train teachers for religious education in a more effective manner.

Key words : Freedom of Religion, Religious Education, Student's Rights, Religious Culture, Personality